해외건설 수주액 400억달러 돌파

작년 이어 두 번째… 내년 500억달러도 가능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대 수주액(476억 달러)을 기록한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연간 해외수주 500억 달러 시대가 열리고 누적 수주액 4,000억 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이란 게 정부 관측이다.

국토해양부는 GS건설과 SK건설의 아랍에미리트 루와이스 정유소 프로젝트 1 · 2(31억 900만 달러, 21억 1,700만 달러)의 수주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12억 6,9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7일 기준 수주액(453억 9,100만 달러)보다 9.1% 적지만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4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는 개가를 올렸다. 건설업체로는 △GS건설(62억 2,600만 달러) △삼성엔지니어링(48억 1,500만 달러) △현대중공업(45억 8,800만 달러) △현대건설(41억 9,400만 달러)이 4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고 SK건설(38억 8,800만 달러)도 40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부문별로는 해외건설 효자종목인 플랜트 수주액이 작년보다 8% 늘어난 286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 중 70%를 차지했고 차세대 해외건설 성장동력인 엔지니어링 수주마저 10% 이상 늘었다.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고 급증의 요인은 유가 상승세를 타고 중동 산유국들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배럴당 46달러였던 두바이산 원유가격은 2분기 69달러, 10월 73달러로 올랐고 해외건설 수주액도 상반기 월 50억 달러를 밑돌았지만 7월 62억 달러, 9월 55억 달러에 이어 11월에는 17일 기준 119억 달러의 수주고를 수확했다.

국토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알제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수주까지 확정되면 올해 연간 수주액이 45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해외수주 500억 달러 돌파와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4,000억 달러 달성이란 목표가 수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17일 현재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3,414억 달러이며 이런 추세라면 내년 4,000억 달러 돌파도 어렵지 않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면 2008년 12월 3,000억 달러 돌파 이후 불과 2년 만에 1,000억 달러의 해외공사를 추가로 수주하는 전무후무한 신기록도 달성하게 된다.

지문인식전자입찰제 시행, 조달청 내년 4월로 앞당겨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문인식전자입찰제' 시행을 당초 내년 7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지난 10월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이 확인된 지난 2005년부터 △동일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 △처벌강화 △신고포상제도입 △신원확인제도도입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 · 제도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법 전자입찰이 뿌리 뽑히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0월 말부터 휴대폰 입찰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PC입찰에 확대적용하기 위한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문인식전자입찰의 운영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체험단(300여명)을 모집했으며 휴대폰 입찰자와 이용체험단의 지문정보를 등록, 무료로 지문보안토큰(5만원 어치)을 보급 중이다.

시범적용을 통해 운영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업체의 홍보와 이용자 교육, 지문등록을 실시한 뒤 내년 4월부터 PC입찰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한명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한 사람이 1개 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2/4분기 동안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혐의가 있는 201개 의심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한 데 이어 최근에는 3/4분기 동안 적발된 131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본격 가동 중인 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포상제를 강화하는 등 상시감시 체제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막아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최신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는 불법전자입찰을 근본적으로 막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사가 체결한 계약, 대표가 구두승인 "공사대금 지급 의무 있다" 판결

회사 소속 이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회사 대표자가 구두로 승인한 경우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계약해제에 따른 공사비 정산 시 설계변경 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고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부산지역 모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도급업체인 A사가 발주자 C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최초 사업시행자인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자금난에 빠져 C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C사 소속 이사 D씨에게 오피스텔의 명의를 넘겨줬다. 이후 A사와 D씨가 새로이 설계변경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후 이 오피스텔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C사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이 계약을 구두로 승인했다.

재판부는 "B씨와 D씨는 도급인으로서, C사는 자사의 이사 D씨의 행위를 사후에 인정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설계변경 된 공사가 타절된 경우 정산범위와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된 공사대금에 기성고를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